

特輯

大型建築工事 一括入札에 对한 小考

※ 本 小考는 1975年度에 制定되고 1980年 11月 24日 (77, 78年度에도 改正) 崔昌奎 · 金斗燮 · 金正澈 · 姜錫元
에 改正 公布된 予算会計法 施行令 特例規程에 関한 件임.

崔昌奎
(新進建築代表)

去二月十七日 協會에서는
上記 題目에 関해 会合을 가
진일이 있다. 參席한 모든

회원들은 한결같이 被害意識과 建築士의 業務 萎縮을
걱정했고 輿奮도 했으나 무엇하나 이렇다 할 対策을
세우지 못했다. 아무런 結論도 못내린 것은 当然한
일이라 생각된다.

그것은 이 問題가 우리 建築士들에게는 至極히 衝擊的인 것과 아울러 우리 建築士들의 힘으로 解決하기에는 너무도 複合的인 内容이 介在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우리 社會에서 이런 特例規定이 왜 생겨났나 하는 그 原因과 背景을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原因과 背景을 正確히 把握함으로써 이 問題를 解決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過去 日本의 境遇 各 大型建設業会社들이各自의 設計部를 가지고 著名한 建築家를 雇傭해서 大規模設計 TEAM을 길러내고 自身들의 莫強한 經濟力과 情報力を 動員해서 먼저 設計를 受注받아 消化시키고, 거기서 얻어지는 情報로서 工事施工入札에 有利한 高地를 占領한다는 事業戰略인 것이다. 莫強한 經濟力으로 設計TEAM에게는 充分한 報酬와 施設과 資料와 情報 및 消耗品에 이르기까지 支援해주고 工事落札에 專力한다면 設計에 投資된 資金은 工事金額의 百分의 三以内에서 充當시킬 수 있다는 計算이고 그 一例로서 去年 어떤 統計에서 보면 大成建設의 境遇 1年間建設工事を 消化한 70%가 大成設計TEAM에서 設計한 工事라는 놀라운 統計가 나타났다는 것은 各 大型建設業들이 다투어 設計 TEAM을 立設할 만한 充分한 事業戰略일 수 밖에 없다. 이때 그 設計 TEAM에 雇傭된 建築士(建築家)는 設計受授에 神經을 必要도 없고 設計資料나 情報는 勿論 完璧한 施設에서 DR-AFTMAN들에의 神經도 쓰지않고 設計에만 專念 할 수 있으니 日本의 境遇 国內公開 懸賞設計에서建設会社 所屬 設計TEAM이 当選하는 率이漸高해 가는 現實에 있다. 이러한 이웃의 事情을 探知한 우리 建築業體(大型)들도 앞을 다투어 設計部를 가지게 된것이고 아울러 이란, 사우디, 中東等의 建設에 介入하

게 되자 그들이 所謂 TURNKEY BASE라는 SYSTEM을 願하니 一石二鳥으로 便利하게 自体内에서 解決할 수 있다는 利点을 가지고 實績을 올리고 있는 現實이다.

이러한 周辺事況에서 우리 建築業體들은 国内の建設工事에 对해서도 이러한 所謂 TURNKEY BASE式을 한다면 하는 생각이 간절할 수 밖에 없다고 생각되며 그들이 가진 莫強한 經濟力이 政治나 行政에 주는 影響力を 利用해서 違法하지 않고 特例規定 같은 것을 만드는데 影響을 주었을 것이라는 億測은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러한 特例規定을 発案 推進시킨 公務員은 그들 나름대로 必要性과 名分을 내세우고 公務員이 마땅히 해야 할 創意의인 것이라고 할 것이나 現存 建築士法이 (建築設計는 建築士만이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嚴存하고 있는 마당에 法도 아닌 规定으로서 法의 精神이나 趣旨을 超越해서 그 法을 無効化시킨다면 그야말로 重大事態가 아닐 수 없다.

무릇 法이란 制定할 時에 그만한 理由가 있고 또立法精神이나 立法의 趣旨가 있는것인데 施行令이나 細則 其他 規定이나 特例規定等은 그 法을 施行하는데 생겨난 것으로 認定되나 母法의 範疇을 넘어서 行政의 便利나 特定 団体나 特定人에게 有利하게 하는 結果가 온다면 그것은 法도 아니고 行政도 아닌것이 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歷史的으로도 이러한 事例는 많이 알고 있고 近者 우리社会에도 이에 類似한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러한 일의 該當 관계자들은 大概 主觀적으로 行政의 能率이나 便利에 기울게 마련이다. 그러나 行政을 感情이나 情実이나 主觀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더우기 外面上의 大義名分이나 必要性을 強調한다하더라도 幕后에 利權이 介在된다든지 壓力이 作用되었다는지해서 特例規定이나 指示, 命令, 示達等이 (母法의 精神이나 趣旨을 넘어서) 亂舞한다면 그 社會는 올바른 社會가 될 수 없고 그러한 行政이나 政治는 民主的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

는 今般의 特例規定의 作態를 非民主의이라는 確定의 인 資料나 情報를 못 가지고 있기에 오직 昨今의 諸狀況에서 그렇게 推測할 뿐이다.

그러면 今般事況이 正當하다고 할 때 果然 우리 建築士들이나 建築士協會는 병어리 놓아두고 만 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 여기서 우리들의 業務가 萎縮될 것이라는杞憂나 被害意識을 갖는 것은 時期尚早라고 보는 것이다.

建設部나 市는(政府) 国家의 大規模設計를 發注함에 있어 零細的인 現在의 建築士事務所의 能力を 過少評価해서 어느 規模以上의 設計는 合同事務室이어야만 한다고 規定짓고 있고 또 現在 그렇게 實施하고 있다. 아울러 小規模의 住宅設計도 이 規定에 包含시키고 있다는 데는 設計 能力評価보다는 行政의 立場이 더욱 作用된 것이 아니냐하는 疑心이 드는 것이다. 그것은 大部分의 零細設計事務所가 小規模住宅의 設計를 많이 하고 있다는 現況에서 볼 때 到底히 理解가 가지 않기 때문이다.

더우기 近者에 와서 우리 建築界에 4名內至 5名 程度로 指名 設計가 大流行인 것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그 指名되는 建築士가 거이 指定되어 있는 느낌이 있고 設計能力을 知名度나 事務室 規模나 實績으로 決定지어 진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것 亦是 監查院監查에의 寄託할 口實이나 不正의 疑心을 防止한다는 明分에서인 것 같지만 建築設計는 隨意契約할 수 있는 데도 不拘하고 구태여 指名 設計를 하는데는 오직 몇 개의 案中에서 選擇할 수 있다는 点은 내세우지만 官의 發注設計에서 建築士 案대로 實施된 件이 몇 件이나 있을지?

決定權者の 趣味나 著好 또는 著作한 建築知識이나 見解가 얼마나 作用되고 案이 마음대로 改造되는 案를 우리는 많이 보고 있는데도 서슴치 않고 強行함은 特殊한 官公吏의 生理라고나 할까, 何如間 야릇한 狀況下에서 作業은 着着進行해가고 있는 大勢이다.

建築士나 協會의 微弱한 힘은 이러한 大勢에 抗拒할 수는 없다. 오직 沈默으로 自己充實을 할 뿐이라고 생각된다. 따지고 보면 結局 設計를 하는 사람은 建築士이거나 建築을 專攻한 設計能力을 가진 建築人임은 틀림없고 設計報酬의 多寡나 月給이거나 또는 그 所屬이나 方便如何를 莫論하고 合同이나 獨立이나 間에 建築士가 하게 되기 때문에 個人的인 競爭이나 被害意識은 있을지 몰라도 全體 建築界로서는,

아무런 被害도 없는것이 된다고 본다. 指名된 特定한 몇 名의 建築士도 建築士協會의 會員이고 보면 自己가 못하니까 배가 아프다는 생각은 말아야 하겠다. 다만 法에 어긋나고 社會秩序에 混亂이 오고 구태여 問題를 複雜化시킨다는데 若干의 意義가 있으나 原來公務員이란 問題는 複雜化 多岐化시켜서 생색을 내는 것이 行政技術이고 能熟한 行政家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 말이다.

筆者는 今般 特例規定은 어떤 意味에서는 建築의 純粹한 作品活動에는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도 생각된다. 完璧한 設計施設과 充分한 報酬와 豊富한 資料와 情報, 高級의 消耗品으로 오직 建築創作에만 專念할 수 있는 組織속에 들어간다면 前記한 日本의 懸賞設計當選이 建築業体 所屬의 設計TEAM이 많아진다는 事實에서 더욱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美國의 著名한 建築家 PAUL RUDOLF도 『차라리 帝王의 專屬建築家가 되고 싶다』라고 實吐한 바와 같이 建築設計事務所가 果然 對人關係, 補助士問題 事務室 運營 問題, 各種 行政問題, 또는 設計件을 얻는 問題等에 没頭해야만 하는지?

이런 일에 時間과 精力を 消費하지 않고 오직 設計에 專念할 수 있다면 얼마나 幸福할까 하는 생각이 가끔 드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 建築士들이 今般特例規定은 못마땅하다고 생각된다면 이 規定을 死文化시키는 方法은 두 가지 程度가 있다.

첫째는 建築士 모두가 团結해서 어떠한 巨額의 報酬를 提供받아도 建築業体의 要求에 應하지 않으면 된다. 그러나 이 方法은 可能성이 거의 없다고 본다. 理由는 說明할 必要조차 없겠다.

둘째로는 一切沈默을 지키고各自의 業務에만 充實하고 時期를 기다리는 것이다. 그러면 利潤追究의 窮極의 目的인 建築業体는 自己네들에 不利해지면 그들의 武器인 莫強한 經濟力이 作動해서 손쉽게 그런 規定을 撤棄시킬 것이다. 이 方法은 至極히 戰略的으로도 可能한 方法이라고 생각된다. 即 그들 内部에서 自滅하는 것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러한 時點에서 몇가지 舉論되어야 할 다른 問題들이 있다. 即 合同事務室 撤棄, 納稅組合의 構成, 設計와 監理報酬의 分離, 各支部의 自治와 協會의 連合制, 設計의 隨意契約實踐 等等 今般의 特例規定보다도 더 重要한 우리를 앞에 가로놓여 있는

当面問題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問題를 早急하게 다루지 말고 會員全体의 利益과 아울러 国家나 社會에 有利한 方向으로 研究検討해서 解決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金斗燮

(極東綜合建築公社代表)

몇 일 전 오랜만에 協會에 들렸더니 大型工事는 앞으로

一括하여 入札한다는 内容으로 財務部令으로 이미 改正되었다는 말을 들었다. 建築設計를 業으로 하는 우리 建築士에게는 너무나 뜻밖의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令을 改正하는 過程에서 누가 무슨 生覺으로 建築界의 公聽會나 一言半句의 協議도 없이 狹地에 一括入札制度化했는지는 알수없으나 이 問題는 建築界에 큰 衝擊을 안겨주었고 波紋을 일게함으로서 建築不在라는 公論마저 자자하게 일고있다. 社會가 發達되고 變遷되어가는 오늘날 建築이 藝術이다, 技術이다하고 論難이 벌어진바 있거니와 내가 協會長 在任時 前職 某長官은 建築設計에서 構造가 60% 차지함으로 앞으로는 建築設計에서 構造와 電氣, 機械等 設計工事의 設計를 각各 分離시켜 別途로 發注시켜야 한다는 寒心스러운 말이 나와 우리를 當惑케 했던 일도 있어 建築을 輕視하거나 아니면 無知의 所致로 돌리고 自慰한 記憶이 生生한데 이번엔 大型工事が 하루아침에 所謂 말하는 “턴키베이스”로 되어버렸으니 앞으로 小型工事도 이렇게 안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形便이고 보면 建築士業務의 萎縮은 날이 갈수록 深化되어 將次 建築士들의 설 땅마저 잊지않을까 甚히 걱정된다.

建築이란 알다시피 人間生活의 三大要素 中의 하나인 住生活로서 人間에게 必須不可缺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겠거니와 옛부터 各種 建築物은 建築家の 創作에 依한 結晶으로 文化的인 側面에서도 그 나라의 尺度를 가늠하는 對像物로 되어오고 있다. 더우기 建築設計의 窮極의 目的是 低廉한 工事費를 들여서 堅固하고 美麗하고 쓰기에 便宜하게 建築하는데 있다고 하겠다. 平面·立面 等의 計劃, 構造의 選擇, 수많은 建築資材의 選擇使用等 어떠한 한개의 建築物이라도 建築士 個個人의 創意力과 技術能力에 따라 作品이 달라지기 마련이다. 따라서 建築을 하고자 하는 建築主側에서는 實力있고 經驗이 豊富한 信賴할 수 있는 建築士를 選定하여 設計를 委嘱하는 것이 通例이고 政府에서 設計用役 發注時 實蹟을 重要視하는 傾向도 바로 이 때문이라 思料된다. “턴키베이스”로서의 利點도 여러가지를 들 수 있겠으나 이는 絶對의in 相互信賴의 바탕下에서만 實行이 可能하다고

본다. 建築主는 建築業者를 信賴하고 發注하여야 되고 施工業者는 良心에 立脚하여 誠實하게 履行하여야 뒷말이 없겠으나 자칫 잘못하면 俗된 말로 北치고 장구치는 格이 되어 施工業者들의 利益追求의 素地가 생길 憂慮가 있고 作品 또한 劣作이 되기 쉽다. 비근한 例로 한동안 불이 일었던 住宅業界에서 自會社안에 “엔지니어링”이라는 看板을 걸고 建築士를 月給쟁이로 고용 設計하여 建築, 分讓했던 聽立住宅또는 아파트 等을 보자. 政府當局의 까다로운 規制와 監督下에 建築하여 分讓하면서도 이 “엔지니어링”이業者들의 利益追求의 앞잡이가 됨으로서 分讓後 入住者들이 施工이 잘못됐다 하여 保全을 일으킨 建物이 한두개 뿐인가를… 大型建築物의 設計와 施工을 一括하여 入札할 境遇 바로 위에서 指摘한 바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그누가 保障할 수 있겠는가? 設計를 專門으로 하는 事務所에서 作成한 設計圖書로 入札하여 施工하고 있는 現在도 施工業者의 無誠意로 깨끗이 施工되지 않아 再施工을 命하여 겨우 執功되는 建築物을 許多하게 보아왔다.

이러한 現實 속에서 相互信賴를 바탕으로 하는 “턴키베이스”로 建築한다는 것은 時期尚早인 것은 고사하고 世界的인 建築思潮에 逆潮하는 行爲이며 建築文化暢達에 制動을 건 處事로 看做된다. 한편 制度의in 面으로 보아도 大型工事의 設計는 建設業者에게 고용된 建築士는 믿을 수 있고 建築設計業을 專門으로 하는 建築士는 믿을 수 없다는 뜻도 되어 健全하게 業을 営爲하고 있는 建築士의 立場에서는 到底히 納得키 여려운 制度로서 不信을 當하는 것 같아 不快한感 禁 할길 없다.

勿論 現時點에서 建築設計事務所를 들이켜보면 大部分이 零細性을 免치 못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受注받는 業務는 建築士 各者가 名譽를 걸고 誠意를 다하여 보다 나은 作品을 만들려고 努力하는 姿勢로 業務에 臨하고 있는 것이다. 하물며 自己의 業을 嘗爲치 못하고 남에게 고용되어 月給을 받고 일하는 建築士들의 마음가짐과 比較할 수 있겠는가? ○ 社會나 政府에서 認定하는 우리들의 地位가, 그리고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冷待를 받아야 하는 現處地가 애석할 따름이다. 이제 우리 建築士들도 精神을 차려야 할때가 온것 같다. 소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格이 되었으나 協会를 헐뜯고相互不信하고 고집만을 내세우던 지난날을 다같이 反省하고 協会를 中心으로一致團結하여, 懸案의 問題를 하나하나 풀어나가 우리의 地位, 우리의 설 땅을 지켜야겠다.

金 正 澈
(株) 正林建築代表)

Turn-key(一括入札) 工事
라하면 中東Boom으로 建設
界는 勿論 一般社會에서도

낫설지 않은 單語가 되었다.

이러한 執行方法은 先進國에서는 信用과 信賴를 바탕으로 開發된 技術과 合理的 執行의 追求를 為하여 利用되고 技術과 文明이 落後된 國家社會에서는 技術導入이 不可避 하므로 consultant들을 通하여 자주 利用되고 있는 것이다.

特例規室에서도 定義했듯이 大型工事란 複合工種工事로서 一定額 以上의 工事와 創作性을 要하는 建築工事로 크게 나눌 수 있고, 建築士 業務와 關聯되는 것은 後者의 境遇가 될 것이다.

政府나 其他 執行當事者が 이特例規定을 施行함에 있어 工事自体의 本質을 파악하고 이 制度로 因한 長短點을 綜合分析하여 合理的인 運營을 해줄 것을 建築界는 바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建築界 自体도 團合된 努力과 研究로 올바를 適用을 為한 各種工事의 分類와 比較 檢討로 對社會的 啓導를 서둘러야 할 것을 먼저 指摘해두고 싶다.

建築士 業務의 萎縮은 비단 一括入札制度의 運營도 問題로니와 建築界 自体에 内包된 너무도 많은 問題들에 對해서 自省해야 되리라 믿는다.

建築士 業務의 量的 問題를 걱정하기 앞서 첫째, 分散되고 和合되지 못했던 建築界이지만 이제는一致團合하여 一括入札에 따른 外國의 先例 研究와 檢討로서 合理的 制度運營의 資料를 作成하는 作業을 先行하고, 둘째로 比較檢討된 資料를 對政府 建議로 規定, 運營細則의 改善을 圖謀하고 나아가서 社會에 對한 啓蒙을 서둘러야 한다. 셋째로 우리 建築士들의 社會的 役割과 責任을 再認識하고 垂範的인 實行이 뒤따라야 한다고 生覺한다.

一括入札을 肯定的 姿勢에서 其受當性과 長點을 살피면 建築行為란 企劃에서 設計 및 施工까지 그리고 使用의 段階까지 分節됨없이 T. Q. C (Total Quality Control) 가 이루어져 적절한 FEAD BACK과 進行의 OVER LAP이 可能하여 速하고 經濟的으로 一貫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點을 들 수 있다. 또한 只今 까지도 禁忌觀해오던 設計와 施工의 不可分의 密月關係가 制度의으로 認定되어 서로의 專門性과 Idea가 補完의으로 交換되고 可能한 工法이 開發되어 建築士나 建設會社의 技術蓄積이 可能하게 되며 技術水準의 向上과 國際競爭力도 培養할 수 있는데 그 目標와 意義가 있다고 본다.

이에따라 建築界는 建築의 教育에서부터 設計의 過程과 施工의 現況執行의 問題와 技術에 이르기까지 綜合的으로 對處해 나아가 그 地位를 確固히 해야한다.

一括入札發注의 對象범주에서 產業施設이나 土木施設等의 適用은 國際的인 例로 보아妥當性이 있다고 生覺되며 모든 工事を 金額으로만 分類한 特例規定은 創作性을 要하는 建築文化的 施設工事는 除外하도록 明文化를 시키므로 本規定의 施行運營의混線이 없도록 誘導해야 한다.

創作의 建築工事에 있어서도 建築士에 依하여 設計意圖와 技術의 뒷받침이 徹底히 된 Specification의 作成과 Preliminary Design에 依하여 實施設計와 施工이 一括된 發注로 建築士의 創作活動이 保障된다면 建築士의 業務도 萎縮됨이 없고 政府가 의도하는 施工技術의 開發 蓄積도 可能한 一石三鳥의 效果도 얻을 수 있다.

어떤 意義에서든 一括入札은 建設會社로서 施工을 為한 設計라는 過程이 있으므로 自体内에 設計Team을 包容하거나 建築士와 共同 參與(joint venture)하는 方法이 있을 것이며 또 J. V에도 外國用役團의 초청도 可能하므로 이를 克服하기 為해서는 建築界가 零細性에서 脫皮하고 經驗의不足 技術의 落後等을 하루速히 習得 補完하여 建築主나 建設會社와도 對等한 活動이 이루어진다면 建築士의 業務는 萎縮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從前에 한 設計事務所에 依하여 設計되던 project가 応札會社數만큼 參與機會는 建築士로서는 많아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建築士 스스로가 能力과 姿勢를 確固히 가다듬어 우리의 職能이 社會로부터 전폭的으로 信賴를 받도록 努力하는 일만이 앞으로 해야할 일인 것 같다.

姜錫元

얼마전, 大統領令 第10078號(1980. 11. 24)에 의해 改

(구olu가建築研究所代表) 正公布된 「大型工事契約에 關한 會計法 施行令 特例 規定」에 의하면 30億 以上的 大型工事는 設計·施工 一括入札로 執行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30億 未滿의 工事라도 각 中央官署의 長이 設計·施工 一括入札이 有利하다고 判断되면, 一括入札로 執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法은 1977年 4月 1日 大統領令 第8525號로서 이미 制定, 公布되었던 바, 이번에 보완하여 改正公布한 것이다. 法이 制定된 目的과 意義는 設計施工을 一括入札시켜 政府豫算을 節約하고, 建設技術과 新工法이 開發되도록 誘導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테면, 건물의 用途 및 規模등의 간단한 條件만을 提示하고, 가장 빠르고, 低廉하게 經濟的으로, 設計施工도록 하겠다는 趣旨인 것이다. 물론, 가장 經

濟的으로 建設하기 위해서는 既存의 工法이 아닌 새로운 工法이나, 建築技術이 開發되어야 될 것이고, 그러한 工法의 設計가 先行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또한, 설계와 시공을 굳이 區分 發注하여 施行할 것이 아니라 一括處理하여 行政人力을 節減하고 나아가서 政府豫算을 節約한다는 趣旨인 것이다.

이러한 이 法의 趣旨와 意圖의 裏面에 法施行으로서 蒸起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우리는 간단히 看過할 수 만은 없다.

建築物은 社會의 肝魄이라고 한다. 우리가 어느한 時代를 일컬어 말할 때에도 그 時期의 가장 代表되는 建築物을 이야기 한다. 建築物이란 단순히 生活하고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記錄이며, 時代像의 反映이고, 그 時代를 代表하는 貴重한 遺產인 것이다. 그래서 空間과 造形을 다루는 建築物의 設計는 오래전부터 藝術創作活動으로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資格과 엄격한 審查를 거친자만이 設計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建築物의 設計를 施工만을 전문으로 하는 建設業體에게 施工에 包含시켜 一括入札로 맡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疑問이 提起되지 않을 수 없다.

中東建設物 以後, 혼히들 이야기하는 턴·키·베이스(Turn Key Base), 즉, 一括入札은 최근에 사용된 말은 아니다. 선진각국에서도 턴·키·베이스의 工事가 있었고 현재에도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 턴·키·베이스에 의해 發注되는 工事라는 것은 電氣·機械 등의 플랜트(plant)이거나 港灣 등의 建設工事에 사용되는 것이지 建築物의 築造에 適用되는 예는 거의 없다. 단, 오일달러로 富國이 된 中東各國에서는 設計를 하거나 施工監理를 할 수 있는 人的資源이 없고, 거의 外國技術에만 의존해야 되므로, 建築物도 一括入札로 간단히 處理하고 있는 實情이다.

프랑스 등 구라파地域의例를 들어보기로 하자. 구라파의 建築物 設計는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는 건축가固有의 責任이며 權限이다. 물론, 建築物의 設計는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基本計劃·施工圖面·電氣·構造 등 모두를 圖面으로 建築家가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建築家는 基本計劃만을 하여, 건설업체를 선정한다. 건설업체의 선정은 우리나라와 달리 建築家의 任務이다. 建築家가 몇개의 건설업체를 선정하여 基本計劃圖書와 建築物의 設計趣旨와 意圖를 說明한다. 그러면 건설업체에서는 建築家의 趣旨와 意圖에 맞게, 그리고 가장 經濟的으로 建設할 수 있게 施工圖面을 制作, 見積과 함께 建築家에게 제출한다. 물론, 각 건설업체에는 施工圖面을 製作하는 엔지니어

링·파트(engineering part)가 있으며, 각기 開發하여 업체별 特性을 가진 建設技術과 工法을 保有하고 있다. 제출을 받은 建築家는 建築主의 입장에서 또한 도시환경적인 측면에서 건설업체를 선정한다. 이렇듯 建築物의 設計와 施工은 區分되어 있고, 建築家는 作家良心에 의해 建築物을 設計하고, 건설업체는 보다 經濟的工法開發에 努력을 경주한다.

지난 2月6日字 '건설회보'에는 4年제 대학과 몇 개의 아파트단지가 이 法에 의해 一括入札도 執行된다는 보도가 실려있다. 그러면 이 法에 의해 大規模 公益建築物들이 設計없이 一括入札로 建設업체에서 執行하게 될 때, 어떠한 문제가 蒸起될 것인가.

첫째, 都市環境과 空間構成의 측면에서, 内的外的 建築의 質이 과연 向上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건설업체도 하나의 경영체로서 가능한範圍內에서 더 많은 기업이윤을 目的으로 하는 企業이다. 이들이 생각하는 建築의 質이 과연 建築家가 作家良心에 따라 創作하는 建築의 質보다 좋을 것인가. 결코 아닐 것이다. 建築의 設計를 施工의 연장으로만 파악하지 않아도 다행일 것이다.

둘째, 그 建物의 建築主인 建築主가 제대로 設計되고, 監理가 될 것인가. 세계 어디를 불문하고 좋은 建築物이 建築되기 위하여서는 3 가지 要素가 있다고 한다. 첫째, 훌륭한 建築家와 둘째, 좋은 建築主와 셋째, 施工技術이라고 한다.

建築家들이 創作活動을 할 때, 가장 큰 문제는 建築主의 理解心과 建築的인 眼目이다. 혼히, 設計된 建築도 施工過程에서 여하한 이유로 變更되는 것을 보아 왔다. 建築主가 建設業體라면, 누구나 企業目標의 하나인 利潤과 直結되어 있다면, 建築物의 設計과정에서부터 부당한 干涉 - 設計條件의 提示가 아니라 - 이 쉽게 예상된다. 또한 監理過程에서는 어떠한 것인가?

建築物 設計受注는 대체로 建築家의 이름과 建築家의 人間關係인데, 전자보다 후자에 의해 受注되는 경우가 많다. 과연 建設業體가 임의로 設計變更 進行한다고 關係當局에 쉽게 고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또한 關係技術公務員만 監理에 임한다면 어떠할까. 建築物을 직접 設計하지 않은 技術公務員이 과연 建築家의 意圖를 제대로 파악하여 建築物에 反映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監理와 設計는 建築土固有의 業務로 建築士法 제19조에 못박혀 있다.

셋째, 建築家의 사기저하에 관한 문제이다. 어느 時代이든 역사적으로 보아 文化가 발달한 時代에서

는 국책으로 藝術人을 보호해 왔고, 이것은 현재 세계적인 추세이다. 建築은 하나의 綜合藝術로서 設計는 創作의 범주에 속한다. 더구나 建築物은 一般 繪畫나 音樂과 달리 公益性이 重要視되고 있으며, 많은 재원이 投資되는 藝術인 것이다. 이러한 것으로 해서 建築家는 나름대로 社會와 民族에 대해 책임감 있는 自負心과 矜持로서 公益的인 造型藝術 創造에 임하는 것이다. 建築家가 위축되고 그들의 사기가 저하되면 建築藝術이 發展될 수 없다는 것은 自明한 일 이 아니겠는가. 마땅히 政府에서는 양식있는 建築家들이 위축되고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깊은 思料가 있어야 될 줄 안다.

넷째, 建築士의 업무위축에 관한 문제이다. 세계적으로 建築家의 創作活動 場所는 아뜰리에이다. 몇 명의 뜻을 같이하는 동지나 후배들과 함께 아뜰리에에서 作業을 한다. 누구에게 고용되거나 간접받기를 畫家나 마찬가지로 싫어한다. 여리나라에서도 우 建築家가 作業하는 場所는 아뜰리에 形式인 작은 事務所에서 많아야 10명내외의 가족을 거느리고 作業을 한다. 그 분위기는 대체로 자유스럽고 분방하기까지하다.

이 法에 의해 작은 아뜰리에 形式의 設計事務所에 몸담고 있는 建築家들 대다수는 大規模 建築物 設計에서 제외되게 되어 있고, 굳이 하자면 建設業체에 고용되거나, 시공회사에 建築材料商人처럼 受注活動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建築士法에 의해 設計事務所는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일정규모 이상의 設計는 合同으로 된 事務所에서 設計를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綜合事務所가 아닌 곳에서는 監理를 할 수 없다든가 하는 것이다. 이들 合同이나 綜合의 大型事務所에서 政府에서 發注되는 30億規模 以上的 建物이나 30億 未滿이라 할지라도 각 發注官署의 長이 一括發注시킬 경우 직접 設計를 담당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設計事務所를 제외시켜야 新工法이 開發되고 建設技術이 發展될 것인가에 대해 깊은 思料가 있어야 될 것이다.

“讀者諸位”
本 協会에서 發行되는 “建築土誌”에 “讀者의 소리”欄을 新設하고 다음과 같이 読者 여러분의 投稿를 기다립니다.

○ 投稿 対象者

1. 本 協会 會員 및 職員
2. 各 学校 学生 및 有関團體나 個人
3. 其 他

○ 原稿 作成 要領

1. 内容 : 国, 漢文, 混用으로 協会 運營에 对한

務所를 제외시켜야 新工法이 開發되고 建設技術이 發展될 것인가에 대해 깊은 思料가 있어야 될 것이다.

다섯째, 建築技術의 發展과 新工法 開發에 關한 問題이다. 建築家 없이 建設技術과 新工法이 何연 建築의 質을 높여가며 開發되고 發展될 수 있을 것인가. 本人은 절대 그러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判斷이다. 구라파 각국의 例를 들더라도 新工法의 開發은, 建築家의 선구적인 提案과 이것을 애써 實現하려는 建設業체의 努力에 의한 것이지 단순히 建設業체에서만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여섯째, 不實工事의 우려다. 建設業체가 設計 · 施工을 一括處理할 수 있으며 企業利潤이 이들의 企業目的의 하나임을 상기할 때, 더이상 부언하지 않더라도 說明이 될 것이다.

일곱째, 이 法이 일으키는 波及效果이다. 극단적으로 說明하여 建築設計事務所와 建築家는 大規模工事에는 建築技術의 發展과 新工法의 開發을 할 수 없으며, 經濟的인 設計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法으로 인해 민간부분의 設計發注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할 것이다.

곧이어 민간부분에서도 建築物의 發注는 텐 · 키 · 베이스에 의해 建設業체에만 發注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이 우려가 事實로 나타날 경우 建築設計事務所와 建築家들이 서야할 땅이 어디일 것인가.

지금까지 이 法의 虛構性과 不當性에 관해 몇가지로 나누어 이야기해 왔다. 그러면 왜 이러한 法이 制定되어야 하는가, 建築家들이 취할 태도는 무엇인가, 우리 모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建築3團體에서는 빠른시일내에 대책을 마련, 關係當局에게 대안을 提示하여 建築文化暢達이라는 관점에서도 法改正을 誘導하여야 할 것이다.

健全한 建議事項 各種 建築物의 質의 向上을 為한 建議事項, 建築土誌의 質의 向上에 関한 意見 等 建築土業務에 따른 各種 經驗談, 에세이, 其他.

(題目, 投稿者住所, 姓名明記)

2. 数量 : 200字 原稿紙 5枚~10枚
3. 期間 : 隨時
4. 採択된 原稿에 对하여는 所定의 稿料를 드림
5. 寄稿處 : 大韓建築土協會 出版事業部

(서울 鍾路区 瑞麟洞 89) ☎ 73-9491~2